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AEO업체 사후관리기간 단축(3년→1년) 등 -

사후관리란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번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가 공고되어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HS 8421.21-9020)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
- AEO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3년→1년)제도개선안 반영
-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II. 주요 개정내용

1.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안 반영

(1)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

- 용도외 사용 우려가 낮은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하여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
- 사후관리 생략 지침(23.03.20)에 대한 고시반영

(2) 자율사후관리업체(AEO) 사후관리기간 단축

- 자율사후관리업체(AEO)가 수입한 부분품·원재료에 대해 기존 최대 3년간 사후관리 하던 것을 1년 이내 기간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기간 단축

2.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 기존 위탁대상물품인 할당관세 적용 사료(P1) 외에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W1)를 수입추천기관 위탁대상물품으로 추가*하여 위·수탁 기관 간 관리대상 통일

* [사유] 관세청 고시상 위탁대상 : P1 / 농림부 고시상 수탁대상 : P1 + W1

→ 고시개정을 통하여 위·수탁기관 간 관리대상 물품 일치(P1, W1 모두 위·수탁 관리)

III. 시행일자

- 2023. 7. 1. (예정)

IV.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당자 : 채정균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042-481-7883
 - (팩스) 042-481-7791
 -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붙임 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 대조표](#)

| Contact



양다운 관세사

T 02-6011-3056
E dyyang@esein.co.kr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